화요세평

보이지 않는 시민 청소년

황수주
북구청소년상담복지·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장

제21대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1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얼마 전 집으로 '대통령선거 책자형 선거공보'가 도착했다. 대선 후보자 공약을 꼼꼼히 살펴보았지만 청소년 정책에 대한 언급은 전무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책·공약 마당' 누리집 역시 청소년과 관련한 정책은 찾아볼 수 없었다.

청소년 정책 전담 부처 설치 필요

2019년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선거연령이 만 18세 이상으로 낮아졌다.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투표권을 가진 고3 청소년 유권자는 약 19만 2,000여 명으로, 광주·전남 지역만 해도 1만 3,000여 명에 달한다. 지난 대선 당시 24만 표의 차이로 당락이 결정된 점을 고려하면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숫자이다. 그러나 여전히 청소년들이 당당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청소년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청소년정책은 찾아볼 수 없다.

최근 한국청소년정책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등 다양한 청소년단체들이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담아 정책적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첫째, 국가 청소년예산 복원이 시급하다. 2023년 윤석열 정부는 청소년 국제교류 지원 예산 127억 원, 청소년 동아리활동 및 어울림마당 등 활동지원 예산 38억 원, 정책 참여지원 예산 26억 원 등을 삭감했다. 이 예산들은 청소년의 성장과 잠재능력 개발을 위한 최소한의 마중물이었다. 청소년활동과 청소년참여의 기반이었던 예산의 복원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며, 예산 없는 정책은 허울뿐이며, 청소년들의 희망과 꿈을 짓밟는 일과 같다.

둘째, 청소년정책을 전담할 독립부처 설치가 필요하다. 2010년 청소년 관련 업무가 여성가족부로 이관된 이후 청소년정책은 가족정책의 틀 안에서 제대로 된 고유성을 발휘하지 못했다. 여가부 내에서 예산과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청소년정책은 그 중요성과 전문성을 상실해가고 있다. 부처 폐지 논란 속에서 청소년정책이 희생되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하며,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독립적인 청소년부처 설치가 필수적이다.

셋째, 청소년전담 공무원제의 의무적 시행이 요구된다. 현행 청소년기본법 제25조는 지자체 및 전담기구에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을 둘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를 시행하는 지자체는 극히 드물다. 청소년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갖춘 공무원을 지자체 전담부서에 배치해 정책의 지속성과 효과성을 높여야 한다.

넷째, 청소년단체 활성화를 위한 대통령 직속 특별위원회 설치가 필요하다. 청소년단체 활동은 원만한 대인관계 형성, 학교폭력 예방, 사회성 함양, 민주시민 역량 강화 등 다양한 긍정적 효과를 가진다. 그러나 현재는 입시 중심의 교육과정과 학교 내 청소년단체 활동 지원 축소로 단체 존립마저 위태로운 상황이다. 대통령 직속의 특별위원회 설치를 통해 청소년단체를 강력히 지원하고 활성화해야 한다.

이 외에도 청소년의 민주시민 역량 강화와 인권 보장을 위해 학생인권법 제정, 청소년 정당가입 연령을 폐지하여 청소년의 정치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교육감 선거연령도 16세로 낮춰 교육의 주체로서 권리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학교 운영위원회의 학생 참여 의무화로 교육현장의 민주주의를 확립해야 한다. 또한 청소년 정치·노동교육 법제화와 성인권 교육 의무화로 디지털성범죄 및 노동권 침해 등의 위협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해야 한다. 청소년증 의무 발급으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 모든 청소년이 차별 없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청소년이 국가의 중심에 서야

정치권에 당부한다. 이제는 청소년을 더 이상 '보이지 않는 시민'으로 남겨두어선 안 된다. 청소년이 국가의 중심에 당당히 설 수 있도록 청소년정책 개혁, 관련 예산 확대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청소년의 시민성을 키우고 존중하기 위해서 청소년의 권리 침해를 방지하고, 청소년의 권리를 확대하고 보장해야 한다. 청소년들이 정책 수립과 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청소년의 삶과 권리를 위한 실천, 바로 지금 시작해야 한다. 청소년정책이 실종된 이번 대선에서 청소년의 목소리를 반드시 들어야 한다.

사설

양심 불량 '꼬리물기' 운전 근절 대책 없나

일부 얌체 운전자들의 '꼬리물기' 운전이 교통 체증의 주요한 원인 중 하나다. 특히 광주의 주요 도로 정차금지 지대에서 양심 불량 운전자들의 꼬리물기 운전이 극성을 부리고 있어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것은 물론 사고 위험까지 초래하고 있어 단속이 시급하다. 정차금지 지대는 도로교통법 제2조 14항에 따라 상습 교통혼잡 교차로에 30㎝ 폭의 황색 사각 설선을 칠한 곳으로 적색 신호 시 차량 진입과 주정차가 전면 금지된 구역이다.

경찰은 단속카메라 증가에 따라 현장 단속을 하지 않고 계도 위주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갈수록 꼬리물기 운전이 늘어나면서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경찰의 계도 위주 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광주경찰청의 단속 건수를 보면 2022년 5건에서 2023년 235건으로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으나 지난해부터 올 3월까지 단 한건의 단속도 이뤄지지 않았다. 경찰의 단속이 현장에서 CCTV로 전환된면서다. 그리고 이는 얌체 운전자들의 꼬리물기 행위를 더욱 대담하게 만들었다. 교통정체를 일으키는 주범으로 지목된다.

실제 동구청 앞 편도 2차선 도로의 정차금지 지대의 경우 사실상 무용지물이 된 지 오래다. 일반 차량은 물론 시내버스도 정차금지 지대를 침범해 구청을 출입하는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기 일쑤고 인근 1개 차선의 심각한 교통혼잡을 초래하고 있다. 동부경찰서 인근 장동교차로도 꼬리물기가 지속돼 위험한 차량 운행이 비번하게 이뤄지면서 시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CCTV마저 설치되지 않은 일부 구간에서는 꼬리물기가 더욱 기승을 부린다.

교차로에서 차량 혼잡으로 신호에 지나가지 못할 것을 인지하고도 앞 차량에 붙어 반대 차선을 막는 '꼬리물기'는 도로교통법 제25조 5항에 규정된 교차로 통행 위반 행위다. CCTV 단속 시 승용차 5만 원, 승합차 6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현장 적발 시 승용차 6만 원, 승합차 7만 원의 과태료와 함께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하지만, 꼬리물기 운전의 근절을 위해서는 효율적인 현장 단속과 과태료 부과액을 높이는 등 법적인 제재를 강화하는 것과 함께 운전자 스스로 법을 지키는 노력도 중요하다. 성숙한 시민의식이 법의 강제보다 효과가 크다. 건강한 사회, 모두가 안전한 사회는 높은 시민의식으로부터 시작된다.

여름 안전사고 대책 지금부터 세워야

연일 초여름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올여름에도 광주·전남 지역은 평년보다 무덥고 강수량이 많을 것이란 전망이다. 기후 온난화 등의 영향으로 해마다 여름 무더위가 심해지는 게 추세적인 흐름이지만, 반갑지 않은 예상이다. 특히 6월은 예년과 비슷할 확률이 절반으로 예측됐지만, 7~8월은 평년보다 높을 가능성이 크다고 하니, 시민들의 여름나기가 걱정부터 앞선다.

올여름의 무덥고 습한 날씨 예측은 광주지방기상청은 물론 전 세계 11개 기상청과 관계 기관이 제공한 기후예측 모델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 기후예측 모델의 확률은 6월은 평년보다 더울 확률이 63%, 7월은 69%, 8월은 79%였다.

올여름에 역대급 무더위가 올 수도 있다는 예상은 열대 서태평양의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높은 데 근거하고 있다. 해수면 온도가 높으면 '따뜻한 공기는 위로 오르고 찬 공기는 아래로 내려가는' 대류활동이 활발해지고 이에 따라 상승기류가 발생하면서 기온이 올라간다. 당연히 무더운 날씨가 지속한다.

강수량도 많아질 전망이다. 6월 강수량이 평년보다 많거나 비슷할 확률이 각각 40%였으며 적을 확률은 20%에 불과했다. 기상청은 북인도양과 열대 서태평양의 해수면 온도가 높아 한반도 남쪽의 고온다습한 기류 유입을 원인으로 꼽았다. 여기에 예년과 비슷한 수준의 태풍도 한반도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보했다.

예로부터 겨울을 '동장군'이라 하고 여름을 '염제'라고 일컫는 데서 보듯 서민들에게는 무덥고 습한 여름은 많은 어려움을 안겨준다. 먼저 건강과 안전에 대한 위협이 커진다. 온갖 유해 한 먹거리에도 각별한 신경을 써야 하고 전력 수요가 많아지면서 전기요금 걱정도 늘어난다. 불쾌지수가 높아지면서 짜증도 빈번해진다. 더구나 전남은 농어촌 지역이 많고 노령인구가 많아 더욱더 걱정이다. 강수량이 많아지면 과수나 곡식이 제때 여물지 못해 경제적 손실로 이어지고 무더운 여름에 바깥일을 하다가는 자칫 큰 사고를 당할 수도 있다.

올여름도 무더위와 많은 강수를 피해갈 수는 없다. 이에 대해 철저한 대비가 상책이다. 스스로 일기예보에 귀를 기울여 안전과 건강에 유의해야 하는 것은 물론 각 지자체에서는 무더위와 장마에 대한 대비를 지금부터 서둘러야 한다. 한 건의 안전사고도 없는 여름이 되길 바란다.

세무광장 〈111〉 증여세 Q&A

아버지가 보험료 납입해도 증여

Q. 피보험자는 어머니이고 수익자는 자녀인 손해보험에 가입해 아버지가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 보험사고가 발생해 보험금을 자녀가 수령하게 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A.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다른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험사고(만기 보험금 지급의 경우를 포함)가 발생한 때에 보험료 납부자가 보험금 상당액을 보험금 수령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위 사례와 같이 보험금 수령인은 자녀이고 납부자가 아버지인 경우 보험금 수령시 아버지가 자녀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게 된다.

만약 납부한 보험료 중 일부를 보험금 수령인이 납부했을 경우에는 보험금에서 납부한 보험료 합계액 중 보험금 수령인이 아닌 자가 납부한 보험료액의 점유비율에 상당하는 금액만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Q. 이혼으로 전 배우자에게 민법에 따른 재산분할청구를 해 전 배우자 명의의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받게 됐는데 증여세를 신고해야 하나.

A. 이혼시 민법 제839조의 2 규정에 의해 전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해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따라서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며, 다만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Q. 현금을 한 번에 일괄적으로 증여를 받는 것보다 몇 달 간격을 두고 나누어서 증여를 받는게 증여세가 적게 계산되나.

A. 동일인으로부터 재차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가액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 합산해 증여세를 과세하고 기납부한 세액을 차감해 납부할 세액을 계산하므로 동일인으로부터 현금을 몇 달에 걸쳐 여러 번 나눠 받더라도 납부할 증여세 총액이 달라지지 않는다.

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 직계존속과 그의 배우자는 동일인으로 본다. 따라서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가액은 합산해 과세한다.

Q.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금액에 상관없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나.

A. 수증자가 거주자인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아래 각 호별 금액을 공제(이하 '증여재산공제')받을 수 있다. 증여재산공제액은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은 금액을 합쳐서 계산한다. 일반적인 경우 해당 증여재산공제 이하의 금액을 증여받게 되면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게 된다. 다만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증여재산공제액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6억원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중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5,000만원(미성년자 2,000만원) △직계비속(수증자와 혼인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5,000만원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1,000만원이다.

광주국세청 제공

독자투고

'선거벽보 훼손' 명백한 범죄행위 명심을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면서 선거 열기는 뜨거워지고 있다. 하지만 일부 사람이 자기가 지지하지 않는 정당의 후보자라며 선거벽보에 낙서를 하거나 찢는 등 훼손하는 사례가 전국에서 발생하고 있다.

선거벽보는 유권자들이 후보자의 정책과 인물을 판단할 수 있는 소중한 정보가 담긴 자료다.

선거벽보 훼손은 단순한 장난이나 표현의 자유로 포장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공직선거법 제240조에 따르면, 선거벽보를 정당한 이유 없이 훼손하거나 철거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는 명백한 불법행위이며,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해치는 범죄다.

선거는 국민의 의사를 가장 평화롭고 합리적으로 표현하는 민주주의 핵심으로 유권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성숙한 시민의식이 모여 공정한 선거가 이뤄지는 만큼 선거벽보를 훼손하는 행위를 해서는 절대 안 된다.

이재복 고흥경찰서 대서파출소장

사진 속 세상

도로 질주하는 자율주행차량

26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컨벤션센터 인근에서 자율주행차량이 시험운행을 하고 있다. 수원시는 '2025 수원 ITS 아태총회' 기간인 28일부터 30일까지 수원컨벤션센터, 광교중앙역, 홍재교삼거리, 센트럴파크로사거리에 이르는 3.2㎞ 노선을 순환하는 자율주행차량을 운행한다.

연합뉴스

1989년 6월 29일 창간 전남매일 2005년 9월 21일 등록번호 광주가 14(일간)
회 장 박철홍 대표이사·발행인·편집인 김경남 주필 이종주 편집국장 박간재
jndn.com 대표전화 062) 720-1000 구독 신청 및 배달안내 720-1004

정치부	(062) 720-1060	문화체육부	(062) 720-1071	사업국	(062) 720-1011
경제부	(062) 720-1067	사진부	(062) 720-1040	광고국	(062) 720-1016~17
사회부	(062) 720-1050	편집부	(062) 720-1073	관리국	(062) 720-1012
사회2부	(062) 720-1043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기사제보 jndnnews@naver.com
우) 61639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좌로 398 (사동)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외부 필자의 글은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정직한 신문 공정한 신문
독자 의견을 환영합니다.
jndnnews@naver.com